

4월 중점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 유형

<4월 재난안전사고 유형>

- | 교통사고 | 전동킥보드 | 산불 | 지역축제 | 황사, 미세먼지 | 등산 |
|------|-------|----|------|----------|----|
|------|-------|----|------|----------|----|
- (도로교통사고, 전동킥보드 사고) 봄 나들이, MT, 각종 야외 행사 등으로 차량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건수 증가(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 사고 원인은 운전자 법규위반, 안전수칙 미준수가 대부분이다.
 - (산 불) 봄철 바람의 특성과 건조한 기후로 임야 등 화재 발생 시 큰 산불로 이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시기이다.
 - ※ 봄철의 낙엽 속 수분 함량: 14~16%(국립산림과학원)
 - 산불 발생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등산) 포근한 날씨 등으로 야외활동하기 좋은 시기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면서 등산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 사고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실족이 40%(총 798건 중 323건)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28%(220건)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7%(138건) 순
 - (지역축제 안전사고) 전국적으로 각종 봄맞이 축제가 개최될 예정으로 축제 중 한꺼번에 많은 관람객이 몰리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 사고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실족이 40%(총 798건 중 323건)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28%(220건)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7%(138건) 순
 - (황사, 미세먼지) 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날아오는 황사 발생이 많고 꽃가루, 매연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이다.
 - 황사가 발생하거나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지면 창문 등을 닫아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히 주의한다.
 - 또한, 황사 외에도 계절풍을 타고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이다.
 - 야외 활동시 진드기 물림 주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감염 주의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정원초과 이용금지

승차정원 초과
범칙금 4만원



보행자 배려하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가고 신호를
준수해주세요



안전모 착용

안전모 외 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주세요
운전자 범칙금 2만원



인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범칙금 3만원



무면허 운전금지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금지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지 마세요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남, 23세)
2021. 9. 29. 01:45경 영남대에서 진량 방면 운행중
압량농협네거리에서 신호 위반하여 직진,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 좌측면과 개인형 이동장치 앞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 발생(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보도 주행 불가,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중 보행자 인적
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 보험가입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 ↓ 징역 · 2천만원 ↓ 벌금)



경산경찰서

※ 교내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동 킥보드의 충전을 금지 합니다.

(참고 2) 산불예방

국민행동요령



산불



산불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합니다.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끕니다.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대피할 이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 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 산불 예방 산불 조심기간 (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산행 전에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되지 않은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합니다.



산에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져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산에서 취사, 야영을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야영장과 대피소에서만 가능

(참고 3) 산행 안전수칙

국민행동요령

산행 안전



등산로를 미리 파악하고
통신장비 등 기본 등산장비를 휴대하며
음주, 단독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고
해지기 한 두 시간 전에 마쳐야 합니다.



하루 산행은 8시간 이하로 하며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합니다.



배낭 무게는 가급적 가볍게 하고
발에 맞는 등산화를 신어야 합니다.



사고를 대비하여 비상식량을 챙기고
산행 중 음식물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습니다.



등산로가 아닌 곳은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빨리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천시 계곡산행은 피해야 하고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급류로 바뀔 때에는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낙석이 자주 일어나는 경사진 곳과
바위벽 아래를 지날 때에는
낙석에 유의합니다.



산행 중 조난 또는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계곡을 피하고 능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 산행 중에는 '산악위치표시판' 고유번호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응급구조 요청 시 119상황실에 고유번호 제공, 위치 확인 가능)

(참고 4) 공연장 관객 안전 수칙

【공연장 관객 안전 수칙】

□ 공연 관람 안전 수칙

- 입·퇴장 시에는 뛰지 말고 천천히 이동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 내에서는 공연장 관리자의 지시와 안내에 따라 행동하여 공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합니다.
- 관람객은 공연장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질서 있게 정해진 이동통로의 출입문을 이용하여 입·퇴장합니다.
- 공연장 관리자는 관람객에게 공연 시작 전에 비상구, 대피통로, 소화기 위치 등
- 기본적인 안전정보를 안내하고 관람객은 이를 숙지하여 위험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협조 하여야 합니다.

□ 비상 시 대피 요령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불이야”라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앞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면 압사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공연장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앞사람 먼저 차례대로 대피합니다.
- 정전되면 당황하지 말고 공연장 관리자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야외 공연 관객 안전 수칙】

□ 공연 관람 안전 수칙

- 입·퇴장 시에는 뛰지 말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 출입문에서는 항상 질서를 지켜서 안내에 따라 입장합니다.
-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와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 통제구역에는 절대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 이동식 좌석의 위치를 임의로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 허가되지 않은 시설 및 물체에 올라타지 않습니다.
(예 : 조명탑, 촬영대, 나무, 안전난간이 없는 발코니, 기타 고소 구조물 등)
-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비상 시 대피 요령

- 화재를 목격하면 “불이야”라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와 안내에 따라 지정 경로로 대피합니다.
- 앞 사람을 밀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면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와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 대피 중이거나 대피 후에는 놓아둔 물건이나 사람을 찾으려고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법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고정식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머리끈을 귀에 걸쳐
위턱을 고정해 주세요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공기누설을 체크하여 안전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평시 환기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낮을 때는 기계환기 실시
(단,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 하루 3번 30분 이상(오전 10시~오후 9시) 환기 실시
-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조리시 환기

-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
-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실시



3GO! 진드기는 흔적을 남깁니다!

관리 1 증상 살펴보고!

고열/오한

두통

근육통

오심/구토/설사

관리 2 물린 흔적 찾아보고!

검은 딱지

물린 자국

관리 3 빨리 치료하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 프프기루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등
- 주로 텃밭작업 등 농작업을 하거나, 등산, 나뭇채취 등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감염위험이 있습니다.
- 발열,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므로 병원 진료 시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 5명 중
1명 사망**
(2013~2021년, SFTS 기준)
 의심 즉시 **의료기관** 방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

질병관리청

진드기 매개 감염병!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 1 옷 제대로 입고

목수건

장갑

토시

장화

모자

긴팔

긴바지

목이 긴 양말

예방 2 기피제 뿌리고

기피제 X **기피제 O**

예방 3 풀숲 피하고

예방 4 씻고, 빨래하고

씻고

전신 샤워 및 진드기 찾기

빨래하고

작업복 분리 세탁하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관련 질의응답(Q&A)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입니까?

-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Q2. SFTS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되니까?

- 주로 야외활동(등산, 봄나물채취 등)에서 반복적으로 진드기에 노출될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일부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어 환자와 접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 원인불명의 발열, 소화기증상(식욕저하, 구토, 설사, 복통)이 주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림프절 종창, 출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Q4. 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감염되나요?

-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참진드기 중 극히 일부만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린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SFTS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드기에 물린 뒤 4-15일(잠복기) 이내에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안전 상식】

※ 첫번째 행동요령: 사고를 목격하면 먼저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화기: 안전핀은 바닥에 두고 뽑습니다.(손잡이 꼭 움켜지면 빠지지 않습니다.)
- 소화전: 2인 1조로 짝을 이루고 한 사람이 호스 노즐(앞부분)을 잡고, 다른 사람은 밸브를 돌려 개방합니다.
- 심폐소생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의식이 돌아 오거나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시행합니다.

※ 심장 제세동기는 캡스(053-850-5005)에 연락하면 가져다 줍니다.

온국민이

소소심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안전 상식



소화기 사용법



안전핀을 뽑는다
Pull pin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Aim at base of f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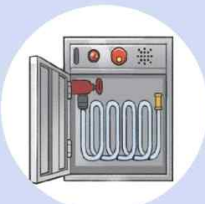
손잡이를 움켜쥐다
Squeeze handle



분말을 끌고루 쏜다
Sweep side to 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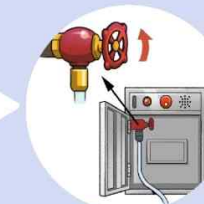
소화전 사용법



문을 연다
Open the door



호스를 빼고 노즐을 잡는다
Take out the hose



밸브를 돌린다
Open the valve



불을 향해 쏜다
Extinguish a fire



심폐소생술 순서



의식 및 호흡확인
Determine unresponsiveness



119 신고 및 AED 요청
Call 119



가슴 압박 30회
30 chest compressions



인공호흡 2회
2 rescue breathings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소방청

환자의 반응 확인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를 외치면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119 신고



환자의 의식(반응)이 없으면 큰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
합니다.

호흡 확인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가슴압박 30회 시행



썩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찾아
30회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깊이는 약 5cm (소아는 4-5cm),
압박속도는 분당 100~120회를 유지
합니다.

기도개방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합니다.

인공호흡 2회 시행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 후 환자
의 가슴이 올라갈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습니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리는 경
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합니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
서 시행합니다.

회복자세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 가슴압박 + 제세동기 사용

가슴 압박술 실시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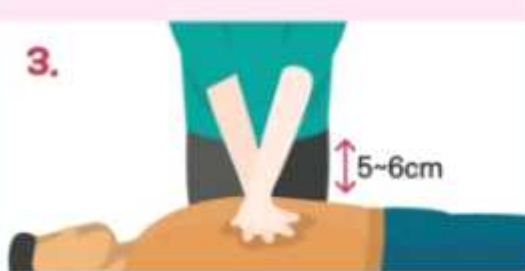
구조자는 무릎을 꿇고 팔꿈치는 펴서
팔과 바닥이 수직(90도)를 이루도록 함.
(체중을 실고 가슴 압박술 실시)

2.



한쪽 손바닥을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대고
다른 손을 평행하게 겹쳐 두 손으로 압박
(손가락 끝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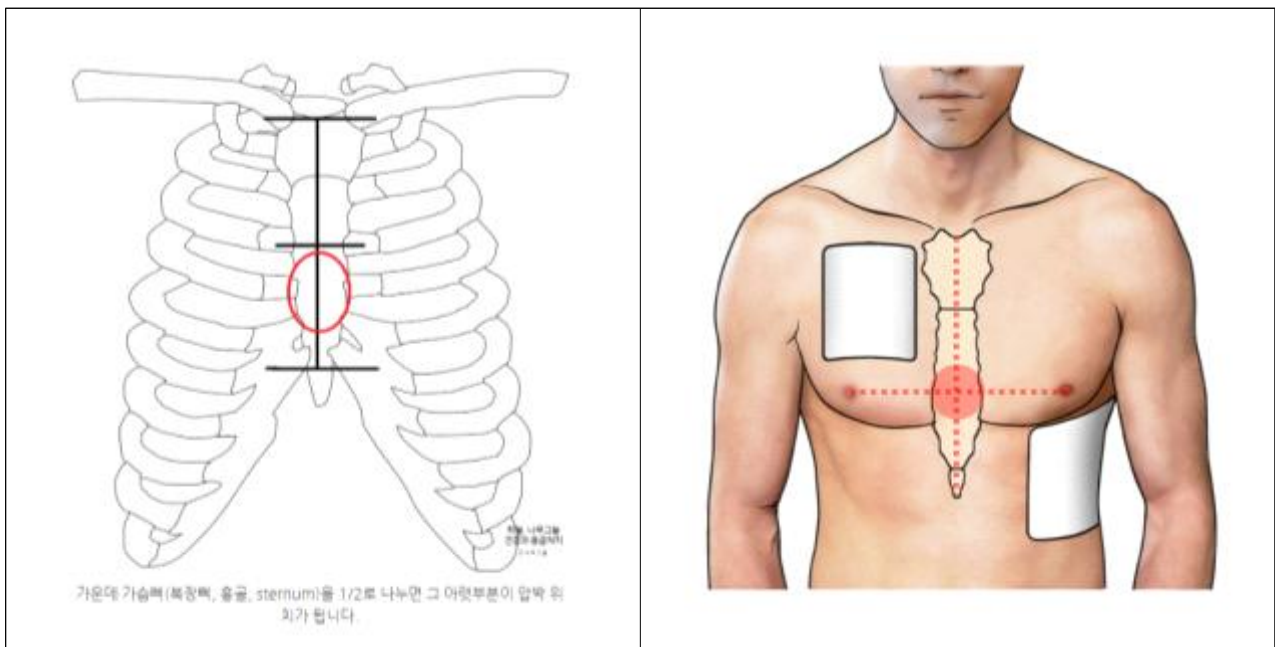
압박 깊이는 **약 5cm~6cm**로
속도는 분당 **100회~120회**를 유지

4.



가슴압박술을 시행한 후
설명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사용

○ 가슴압박 위치 및 제세동기 패드 부착 위치



국민행동요령

자동심장충격기(AED)



소방청

자동심장충격기 켜기



대한심폐소생협회

자동심장충격기를 켭니다.

* 자동심장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합니다.

두 개의 패드 부착



대한심폐소생협회

환자의 상의를 벗긴 후에, 두 개의 패드 중 한 패드를
오른쪽 쇄골 아래에 부착하고, 다른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겨드랑이 중앙선**에 부착합니다.

심장리듬 분석



대한심폐소생협회

자동심장충격기가 심정지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심장충격 실시



대한심폐소생협회

1. 심장충격이 필요하면 “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충격기가 스스로 충전합니다.
2. 충전 완료 후 “**심장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모든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한 후에 **심장충격 버튼을 누릅니다.**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심장충격을 시행한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십시오**”
라는 지시가 나오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참고 8) 화재 대응 요령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prevent/SDIJKM5116.html?menuSeq=127>

○ 소화기 사용법(영상): <http://cdn.kfsi.or.kr/kfsa/WebService/sobangEdu/014.mp4>

○ 옥내소화전 사용법(영상): <http://cdn.kfsi.or.kr/kfsa/WebService/sobangEdu/025.mp4>

화재대처

■ 화재 경보가 울릴 때



1 비상소집을 합니다.

- 자고 있을 때 화재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 대피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2 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

-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3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4 119로 신고합니다.

-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 휴대폰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속히 해주시고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5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놀이터 등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대학 내 화재 시 행동요령

화재 전파 	■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작동 ■ 주변에 화재발생 사실을 전파		
화재 신고 	■ 119 화재신고 현재 위치 :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000건물		
초기소화 			
			
피 난 	■ 가까운 비상구를 통해 계단으로 피난		
집 결 	■ 피난 완료 후 건물 옆 안전한 장소로 집결		
금지행위 	■ 화재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계단 이용) ■ 피난 후 건물로 재진입 금지		
비 상 연 락	경비상황실	캡스	053-850-5005
	소방안전관리자	안전보건팀장	053-850-5302, 5304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응합니다.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립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 이용 금지**)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요령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응합니다.



집안에 있을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후,
밖으로 나갑니다.

집밖에 있을 경우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하여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합니다.
※ 지진 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됩니다.**

학교에 있을 경우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백화점, 마트에 있을 경우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합니다.

극장, 경기장 등에 있을 경우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자리에 있다가,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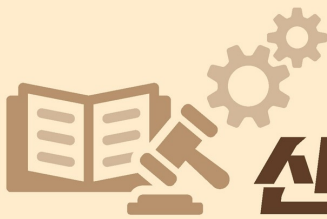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들으면서
키를 꽂아 두고 대피합니다.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해안에서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대한산업안전협회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순번	법조항	주요내용	벌칙
1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공시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해당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제16조[관리감독자]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조 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하는 업무 수행 ·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및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해당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해당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시행규칙 [별표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 참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정기: 사무직(매번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외(매번기 12시간 이상) · 채용 시: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이상 · 특별교육(39개작업): 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정기: 연간 16시간 이상 ※상기 과정별 일용 및 계약기간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교육시간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상기의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 시간과 동일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1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상의 고치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2	제38조[안전조치]	·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계·기구, 기타 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및 전기·열·기타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취급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추락·붕괴·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등의 장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3	제39조[보건조치]	·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 배출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계측감시, 정밀공작, 단순반복작업 등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채광·조명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	미제출 등: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적합통보 전 기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제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5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공정안전보고서의 적합통보 전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가동불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6	제54조[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 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7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발생시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그 발생원인 등 기록·보존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 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	은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8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호구 착용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지시 제외)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9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됨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제84조[안전인증]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유해·위험기계를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 대상기계 등을 제조·수입하는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 ·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은 사용해서는 아니 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1	제93조[안전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2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योग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	미게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소당) 미교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대상자 1명당)
23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4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디아·사민 및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폴타르피치 휘발물, 크롬강 가금, 크롬산 이온, o-톨리딘 및 그 염, 황화니켈류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5	제119조[석면조사]	· 건축물·설비의 철거·해체시 석면조사 실시 후 그 결과의 기록·보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6	제122조[석면해체, 제거]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 건축물·설비에 함유량과 면적 이상 석면함유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제거 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시행규칙 [별표21] 의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대상 실시(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 유해인자, 소음(80dB이상) 및 고열의 물리적 유해인자, 분진의 유해인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8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 대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1년 1회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9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시행규칙 [별표22] 의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 근로자 대상 실시 -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 인자, 분진, 소음과 진동 및 방사선 등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 배치 시 또는 작업전환 시 작업 전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0	제164조[서류의 보존]	·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보존기간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함 - 3년 보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회의록(2년),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결과(5년/30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각 서류당)